

가칭) 용머리 강당길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공고

조합원모집개요

- 가칭) 용머리 강당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공고의 내용을 확인 후 신청 및 계약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계약 착오 등에 대해서는 신청(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유의하시고,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법」 제11조의 3의 규정에 따라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신고가 수리되었으나, 본 사업은 개개인의 조합원이 모인 지역주택조합이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무산 또는 사업진행 지연 시 모든 책임은 조합원 가입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본 주택의 조합원모집 공고일은 모집신고 완료 후입니다. 조합원 모집신고 수리완료(2022년 11월 30일) **신고필증 번호 : 2022-재개발재건축과-지역주택조합모집-1**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본 주택의 건설지역 “전주시 완산구 서완산동 2가 80-135번지 일원”에서 가칭) 용머리 강당길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및 주택사업계획승인 등의 절차를 통하여 진행되는 사업이며, 주택사업 관련 인·허가 진행에 따라 사업내용이 다소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 지역주택조합 조합원가입 자격조건이 될 경우 주택청약통장 없이 신청(가입)이 가능합니다.
- 본 사업관련 사업(모집)주체의 안내문, 광고, 홍보물 등의 내용은 예정사항으로 본 사업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서 인·허가 과정에서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적인 사항은 인·허가 완료 후 확정합니다.

※ 가칭) 용머리 강당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을 위한 광고

1. 조합원 모집주체의 성명 및 주소

구분	고유번호/법인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주소	
모집 주체	추진위원회	747-80-02564	가칭) 용머리 강당길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김 경 심	전주시 완산구 강당2길 12 (서완산동 2가)
	업무대행사	195511-0214042	주식회사 다익선개발	조 규 승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4길 55
자금관리신탁사	110111-2867418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권 준 명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타워역삼)	

※ 자금관리신탁사는 무궁화신탁과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 체결.

2. 주택건설예정지의 지번, 지목 및 면적

대지위치	전주시 완산구 서완산동 2가 80-135번지 일원	주 용 도	공동주택(아파트) 7개동 부대시설, 복리시설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
대지지목	대지, 도로, 전, 임야		
지역지구	제2종 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		

대 지 면 적	사업대지(계획)	15,097.80㎡	연 면 적	지상	24,367.13㎡	건축면적	4,176.96㎡
	공공시설 제공	419.80㎡		지하	16,320.00㎡	건폐율	28.46% / 법정 60%
	실사용 대지면적	14,678.00㎡		계	40,687.1344㎡	용적률	166.01% / 법정 230%

세 대 수	59A - 78세대 / 59B - 17세대	40.25%	층수 / 높이	지하 2층, 지상 10층
	84A - 121세대 / 84B - 20세대	59.75%	조경면적	18.26% / 법정 18%
	총 236 세대	100%	주차대수	계획 283대 / 법정 211대

※ 상기 사업개요는 인·허가 과정(통합심의 등)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위치 및 면적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업무대행사, 주택홍보관에 전시 또는 비치돼있는 홍보물을 열람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토지확보 및 현황 및 계획

가. 토지확보 현황 : 총 부지(매매계약서, 토지사용승낙서, 동의서 등) - 2023년 3월 현재

구분	면적(㎡)				지구단위계획면적(㎡)		토지 확보 현황	
	공부상면적	제외면적	지구단위 계획면적	%	도로/공원 공제면적	주택건설면적	토지 사용권원(사용승낙)	
							면적(㎡)	비율(%)
사유지	14,914.80	-	14,914.80	98.79	-	14,678.00	10,569.44	70.01
국공유지	183.00	-	183.00	1.21	419.80			
합계	15,097.80	-	15,097.80	100	-			

나. 토지 사용권원 및 소유권 확보계획

구분	토지면적(㎡)	필지수	조합원모집공고 이후	조합설립인가 전	사업승인접수 전	비고
사유지	14,914.80	28	12,500.00	14,000.00	15,000.00	
국공유지	183.00	2	-	-	-	
합계	15,097.80	30	82.79%	92.73%	99.35%	

※ 토지동의 : 모집승인 후 설립인가 접수 전까지 토지동의 80%이상 달성 계획이며, 현재 토지동의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2년 9월부터 토지약정금(계약금)을 지급하면서 토지매매계약서, 지구단위동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징구할 계획임.

※ 토지확보 : 사업승인신청 전까지 조합원 분담금 및 토지잔금 P.F대출 등을 이용, 국공유지 포함 95%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할 계획이며 그 외 5%에 대해서는 「주택법」제22조에 의거하여 매도청구 가능함.

4. 주택건설 예정세대수 및 주택건설 예정기간

주택건설 예정세대수	주택건설 예정기간
236세대	착공예정일로부터 30개월

※ 상기 예정세대수는 인·허가 과정(통합심의 등)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조합원 모집세대수 및 모집기간

조합원 모집 세대수								모집기간
타입	59A	59B	59C	84A	84B	84C	합계	조합원모집 공고일로부터 모집완료일까지
세대수	40	10	-	80	10	-	140	
분담금 변동								

※ 상기 조합원 모집세대수는 인·허가 과정(통합심의 등)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조합원 모집세대수 300세대 이상 모집완료 후 잔여세대는 납부분담금이 변동될 수 있으며, 조합설립인가 기준으로 조합원 모집 상황에 따라 추가조합원 모집이 필요한 경우 관할구청으로부터 추가모집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주택사업 승인신청 전까지 공개모집할 예정이며 추가조합원 모집 및 일반분양분의 납부분담금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택법」제54조에 의거 모집세대가 30호(세대)이상일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을 얻어 일반분양예정이며, 30호(세대)미만 일 경우 임의분양 예정입니다.

6.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및 대지면적·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단위 : ㎡)

주택 형태	세대 수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계약 면적	세대 구성비 (%)	대지 지분 면적
		주거전용	주거공용	소계	기타공용				
					기타공용	지하주차장			
59A	78	59.9525	25.5386	85.4911	5.9717	48.0448	139.5076	33.05	
59B	17	59.9558	25.3706	85.3264	5.9720	48.0475	139.3459	7.20	
59C									
84A	121	84.9113	30.3275	115.2388	8.4577	68.0463	191.7428	51.27	
84B	20	84.9838	30.2354	115.2192	8.4650	68.1044	191.7886	8.48	
84C									
계	236	17,669.4869	6,697.6465	24,367.1334	1,760.0000	14,160.0000	40,385.6114	100	

- ※ 상기 면적에는 근린생활시설 면적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주택공급면적 및 대지면적은 인·허가 과정(건축심의, 사업계획승인 등)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 세대 또는 해당 동의 실제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 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 ① 부대시설 : 주차장(14,160.00㎡), 관리사무실(250.00㎡), 기계/전기실(750.00㎡), 경비실(40.00㎡)
- ② 복리시설 : 경로당(120.00㎡), 주민공동시설(600.00㎡), 어린이놀이터(실외)(200.00㎡)
- ③ 근린생활시설 : 근린생활시설(400.00㎡)

7. 조합가입 신청자격, 신청 시의 구비서류, 신청일시 및 장소

<p>신청자격</p>	<p>※ 「주택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로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p> <p>1. 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조합원의 사망으로 그 지위를 상속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있다.</p> <p>①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을 포함)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일 것.</p> <p>②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을 포함) 중 1명에 한정하여 주거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일 것.</p> <p>③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전라북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하여 온 사람 일 것.</p> <p>④ 본인 또는 본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가 같은 또는 다른 지역주택 조합의 조합원이거나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닐 것.</p> <p>⑤ 조합원이 근무, 질병치료, 유학, 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로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p> <p>※ 조합원 자격의 확인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p>	
<p>본인 계약 시</p>	<p>준비물</p>	<p>① 신분증 ② 인감도장 ③ 막도장(조합제출용/한글이름) ④ 무통장입금증(조합원가입 신청금 입금증)</p>
	<p>구비서류</p>	<p>⑤ 주민등록등본 3통(세대원 전원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사유, 일자 기재) ⑥ 주민등록초본 2통(주소 변동사항 및 세대주 사항 포함) ⑦ 가족관계증명서 2통 ⑧ 인감증명서 11통(사용용도 없이 발급)</p>
	<p>추가서류</p>	<p>⑨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2통(배우자 분리 세대인 경우) ⑩ 혼인관계증명서 2통(미혼 또는 단독세대주) ⑪ 주택보유자 : 부동산 등기부등본 1부</p>
<p>대리 계약 시</p>	<p>추가서류</p>	<p>※ 제3자 대리계약 시(배우자, 직계 존·비속에 한함), 상기 준비물 및 구비서류 외에 다음 서류를 추가로 준비해야 합니다.</p> <p>⑫ 가입신청자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조합가입신청 위임용) ⑬ 가입신청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주택홍보관 비치) ⑭ 대리인 신분증 및 도장 ⑮ 분양전환 임대아파트 보유자 : 임대아파트 계약서 사본 1부</p>
<p>신청일시</p>	<p>조합원모집공고일로부터 조합원모집 완료 시까지</p>	
<p>신청장소</p>	<p>전북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346 / 가칭) 용머리 강당길 지역주택조합 주택홍보관</p>	
<p>문의전화</p>	<p>주택홍보관 대표번호 : 063)236-2030</p>	

- ※ 상기 내용 외 신청자의 조합원 자격에 대하여는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름
- ※ 조합원 모집 시, 당 추진위원회에서는 조합원 자격에 대한 확인 및 검증 없이 조합원 가입 희망자가 조합원 가입신청서에 기재한 사항만으로 접수를 받으므로 본인의 조합원자격(거주지역, 무주택여부, 주택소유여부 등)을 신청 전에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의 조합원 자격은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사업계획승인 시, 사용검사(또는 임시사용승인)시 국토교통부와 금융결제원의 주택전산망 검색, 제출서류를 통해 확인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른 사실이 판명되거나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부적격자의 처리 및 계약취소와 관련하여 조합 가입계약서에 의거하여 처리됨을 알려드리며, 조합원 자격에 해당되는 자만이 조합원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 ※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될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계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의 취소 및 고발 조치 합니다.
- ※ 주변의 신축상황, 인근 시설물의 변경 및 층·호실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향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합니다.
- ※ 상기 계약일정은 시행자 일정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된 계약일정은 별도의 모집공고를 통해 게시합니다.)
- ※ 신청 또는 계약 시 제출한 모든 서류는 원본서류(사본불가)를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폐기하오니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8. 계약금 · 분담금의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

가. 계약금 · 분담금의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

단위(천원)

주택 형별	층별	군	분담금 총액 (모집가)	업무 대행비	계약금						중도금 (60%)	잔금 (20%)
					1차		2차		3차			
					계약 시		계약 후 1개월		설립인가(10%)		1회차 ~6회차	입주 시
분담금	대행비	분담금	대행비	분담금	대행비							
59A	1층	가	250,000	20,000	5,000	5,000	20,000	5,000	25,000	10,000	25,000	50,000
	2~3	나	259,000	20,000	5,000	5,000	20,900	5,000	25,900	10,000	25,900	51,800
	4~6	다	269,000	20,000	5,000	5,000	21,900	5,000	26,900	10,000	26,900	53,800
	7~10	라	281,000	20,000	5,000	5,000	23,100	5,000	28,100	10,000	28,100	56,200
59B	1층	가	250,000	20,000	5,000	5,000	20,000	5,000	25,000	10,000	25,000	50,000
	2~3	나	259,000	20,000	5,000	5,000	20,900	5,000	25,900	10,000	25,900	51,800
	4~6	다	269,000	20,000	5,000	5,000	21,900	5,000	26,900	10,000	26,900	53,800
	7~10	라	281,000	20,000	5,000	5,000	23,100	5,000	28,100	10,000	28,100	56,200
84A	1층	가	344,000	20,000	10,000	5,000	24,400	5,000	34,400	10,000	34,400	68,800
	2~3	나	353,000	20,000	10,000	5,000	25,300	5,000	35,300	10,000	35,300	70,600
	4~6	다	365,000	20,000	10,000	5,000	26,500	5,000	36,500	10,000	36,500	73,000
	7~10	라	379,000	20,000	10,000	5,000	27,900	5,000	37,900	10,000	37,900	75,800
84B	1층	가	344,000	20,000	10,000	5,000	24,400	5,000	34,400	10,000	34,400	68,800
	2~3	나	353,000	20,000	10,000	5,000	25,300	5,000	35,300	10,000	35,300	70,600
	4~6	다	365,000	20,000	10,000	5,000	26,500	5,000	36,500	10,000	36,500	73,000
	7~10	라	379,000	20,000	10,000	5,000	27,900	5,000	37,900	10,000	37,900	75,800
총 236 세대												

- ① 조합원 가입분담금 이외의 조합원 중도금 부담금의 납부 시기는 인·허가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향후 조합설립 인가 및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이 완료되면 조합원 중도 부담금 회차별 납부일정을 개별 통지할 예정입니다.
단, 조합원 중도분담금 납부일정 및 금액은 금융기관 대출여건 등에 따라 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납부일정 등이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사전에 개별 통지할 예정입니다.
 - ② 조합원 부담금 중 조합원 중도분담금 1회차에서 6회차의 중도금 대출(조합원 부담금의 약 60%)은 이자후불제 조건이며 대출 미신청자 또는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할 시 상기 납부 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한다.
 - ③ 위 계약금 1차, 2차 납부에도 불구하고 토지비 및 초기사업비가 부족한 경우 토지담보 대출 및 조합원 신용대출(필요 시 조합원 대출자서 해야 함)로 초기사업비의 일부를 조달할 수 있습니다.
 - ④ 상기 조합원 부담금에는 토지취득관련 제세공과금, 개별소유권 보존 등기비, 개발부담금, 사업소득세, 추가파일 공사비,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불가피하게 추가로 발생하는 제반 비용도 조합원 부담금과는 별개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 ⑤ 상기금액은 조합설립 후 1차 모집금액으로 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총별 차등을 두어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이며 발코니확장비 미포함금액으로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인·허가 과정에서의 면적 및 공급세대의 변경 및 도급단가 인상 등으로 추가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업무대행비가 미포함된 계약금 및 부담금 금액입니다.
 - ※ 일부 대물조합원은 조합원분담금 납부내역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상기 각 주택형별, 동별, 총별 기재사항은 조합원 분양분과 일반분양분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 ※ 중도금(조합원 부담금의 60%)일정은 시공사 협의 과정에서 일정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습니다. 다만, 임시 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위 단서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 조합원 부담금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조합원 부담금 납부일이 토, 일요일 또는 국경일인 경우 다음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 조합원 부담금은 향후 사업내용 변경 등으로 추가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 조합원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 업무대행비

업무대행비 납부시기 및 방법	총 액	1차 (계약 시)			비 고
		금액	부가세	합계	
	22,000,000	20,000,000	2,000,000	22,000,000	

※ 조합업무대행비는 조합원 부담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며, 부가세는 별도 금액이며 추후 별도 고지 예정입니다.

9. 조합 자금관리의 주체 및 계획

자금관리주체		▷ 상 호 :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 법인등록번호 : 110111-2867418 ▷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 (역삼동, 포스코타워 역삼) ▷ 대표자 : 권 준 명	
자금관리계획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에 의거하여 자금 일체를 신탁사에서 관리	입금자란 표시
계좌 번호	신청금(계약금)	광주은행 1107-021-521377 / 예금주 : (주)무궁화신탁	본인 이름 기재 예)101동 1101호 -> 11101홍길동
	조합원 부담금	광주은행 1107-021-521399 / 예금주 : (주)무궁화신탁	
	업무대행비	광주은행 1107-021-521402 / 예금주 : (주)무궁화신탁	

10. 조합원 당첨자 발표의 일시·장소 및 방법

- ① 조합원 당첨은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사업계획승인 시, 사용검사(또는 임시사용승인 시)국토교통부의 주택전산망 검색, 제출서류 등을 통해 확정된다.
(확인결과 다른 사실이 판명되거나 신청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② 조합원 당첨자 발표는 조합원 개인에게 개별 안내하고 문자, 홈페이지, 서면 등으로 안내합니다.

11. 부적격자 처리 및 조합원 탈퇴, 자격상실, 제명에 관한 사항

- ① 관계법령 및 규약에서 정하는 조합원 자격에 해당하지 않게 된 자의 조합원 자격은 자동 상실된다.
단, 소명기간 내 소명을 한 경우는 조합원 가입이 가능함.

- ② 조합원은 임의로 조합을 탈퇴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15일 이전에 그 뜻을 조합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조합장은 총회 또는 임원회의 의결로서 탈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③ 조합가입계약서 작성 후 조합원 탈퇴, 조합원자격의 상실(부적격자 판정)/제명 등 조합원 귀책에 의해 그 지위를 상실한 자에 대하여는 위약금으로 조합원이 납입한 제납입금(업무대행비 포함)의 10%를 공제한 잔액(무이자원금)을 환급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본인계좌로 환급하되 불능시는 공탁 처리할 수 있다.
단,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로 공제할 기타분담금 및 환급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고, 기타사항은 법령 및 조합규약에 따른다.

12. 조합가입 계약일 및 계약 장소

가. 가입계약일 및 계약 장소

계약일	계약 장소
조합원모집 공고일로부터 ~ 조합원모집 완료시까지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346 가칭) 용머리 강당길 지역주택조합 주택홍보관

나. 신청금 및 납부계좌

구분	금액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1차 계약 시	계약금(59㎡)	일금오백만원(₩5,000,000)	광주은행	1107-021-521377	(주)무궁화신탁
	계약금(84㎡)	일금일천만원(₩10,000,000)			
	업무대행비	일금오백만원(₩5,000,000)	광주은행	1107-021-521402	(주)무궁화신탁

- ※ 상기 신청금액은 조합원 가입 신청자 본인 명의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 ※ 조합원 청약신청금 납입에 따른 기간이자는 없습니다.
- ※ 주택홍보관에서는 조합원 분담금을 수납하지 않으며, 대금 납부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한 어떠한 형태의 입금 및 납부로 정상 납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 신청금액은 지정 신청금액(500만원)만 인정하며, 1인 1건만 인정합니다. 또한 상기 신청금 입금계좌에 입금하지 않을 경우 무효이며, 조합원 청약신청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 무통장 입금증은 계약체결 시 계약금 납부영수증으로 같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 상기 신청금은 당첨에 따른 계약체결 시, 1차 계약금으로 입금내역을 전환합니다.
- ※ 조합은 조합원 모집 세대수를 초과하여 조합원 가입신청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중 당첨자를 제외한 가입신청자는 가입신청 시 제출한 환불신청서에 의하여 신청금을 환불함으로써 가입신청 내용을 철회한 것으로 같음합니다.
- ※ 계약세대 초과분 및 과·오납분에 대한 환불은 해당 조합원 환불신청서(조합 양식)를 제출하고 신청금을 입금한 날로부터 30일이 되는 날로부터 환불신청을 받아 환불신청서에 기재된 환불금 입금요청계좌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 ※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는 가입비 등을 예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조합원을 모집하는 자는 청약 철회 의사가 도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가입비 등을 예치한 기관의 장에게 가입비 등의 반환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또한 미계약으로 인한 상기 신청금의 환불은 환불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반환되며, 문자연락으로 공지합니다.
- ※ 신청금 환불 신청 시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통장사본, 신분증사본, 입금증 등이 필요하며 구비서류가 없을 경우 환불되지 않습니다.

13. 동·호수의 배정 시기 및 방법

배정시기	조합원의 동·호수 결정은 조합의 사업계획승인 시, 조합, 업무대행사 및 시공사가 사전협의한 지정시기에 공정한 추첨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배정방법	추첨방식 외에도 조합원 가입순서 및 조합원 자격을 동시에 충족한 조합원에 한하여 우선하여 아파트를 공급하는 방식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공급방식은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잔여분은 선착순 동·호수를 임의 지정할 수 있습니다.

- ※ 동·호수 및 배치는 사업계획승인 후 확정되며 건축심의 및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조합원 모집 예정세대수 (236세대)보다 감소 시 조합원 가입순서 및 조합원 자격을 동시에 충족한 조합원을 우선으로 최종 결정되며 이에 따른 이의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14. 사업진행 예정일

사업진행	조합설립인가 신청	사업계획승인 신청	착공	입주
예정일	2023년 5월	2023년 12월	2024년 2월	2026년 9월

15. 조합원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

가.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 ① 사업계획으로 정한 조합주택의 공급 청구권
- ② 총회의 출석권, 발언권 및 의결권
- ③ 임원의 선출권 및 피선출권
- ④ 조합가입계약서 작성 후 조합원 탈퇴, 조합원 자격의 상실(부적격자 판명)/제명 등 조합원 귀책사유로 환급요청 시 위약금으로 조합원이 납입한 제납입금(업무대행비 포함)의 10%를 공제한 잔액(무이자원금)을 환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급

나.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가 있다.

- ① 조합원 분담금(조합운영비, 토지매입비, 건축비, 사업비, 업무대행비, 각종 용역비 등 조합원의 사업추진을 위해 조합원이 조합에 납입하는 일체의 금액 등)의 납부 및 조합 가입계약서, 조합 총회 등에서 정한 금액 등의 납부 의무
- ② 관계법령 및 조합규약, 총회 등의 의결사항 준수 의무

다. 조합원의 의결권은 평등하며 권한의 대리행사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조합원의 유고 등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족 중 성년자를 대리인으로 하여 위임장을 제출하고 그 권한을 대리로 행사할 수 있음.

라. 조합원이 주소 또는 인감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조합에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해당 조합원은 조합에 일체의 이익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6. 그 밖에 추가분담금 등, 조합가입 시 유의사항

※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라며, 미확인하고 계약할 시 이익을 제기할 수 없음

가. 사업부지에 관한 유의사항

- ▷ 신청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변 환경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 이익을 제기할 수 없음.

나. 건축 관련 유의사항

- ▷ 2009년 4월 1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 기준에서 주거전용 면적만 표기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상기 공급금액에는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통합취득세가 미포함 되어있음.
- ▷ 상기 세대별 공급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엘리베이터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 그 밖에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음.
- ▷ 본 아파트는 시공사 선정 및 협의에 따라 도면, 구조, 마감재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개발계획 및 사업지 주변 도로차선 및 교통체계는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으로 사업주체, 지자체 및 기타 관련기관의 추진 과정 및 각종 인·허가, 교통영향평가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해 이익을 제기할 수 없음.
- ▷ 대지경계,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의 대지면적은 최종 측량,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면적 증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익을 제기할 수 없음.
- ▷ 준공 전, 후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유부분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사업계획승인 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수락하에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사업계획승인 변경 등 관련법규에 따른 제반서류는 요청 당사자가 징구하여 사업주체로 제출하여야 함.
- ▷ 홍보관에 시공된 제품 및 적용된 마감재는 자재 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출시에 따라 동급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 홍보관은 조합원 모집완료 후 임의로 폐쇄 및 철거할 수 있으며, 시공사 선정 이후 변경될 수 있음.
- ▷ 홍보관의 전시품 및 연출용 시공부분, 카달로그, 팸플릿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 및 규모,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 심의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조합원부담금은 조합원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금액이며, 본 사업의 토지 및 건축물 소유권이전용, 학교용지부담금 등 관련법규에 따라 개별적으로 발생하는 부담금 및 제세공과금은 준공 시 조합원이 별도 부담하여야 합니다.
- ▷ 본 아파트의 명칭, 동 표시 및 동 번호, 외부색채와 그래픽은 관계기관의 심의 또는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조합원모집 이전에 제작된 홍보물은 사전홍보 시 소비자의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되거나 사용된 것으로 실제와는 상이할 수 있으므로 주택홍보관 방문 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본 아파트의 시공상 구조(기초형식 변경 포함) 및 성능부분에 대해 행정관청 협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 ▷ 기타 유의사항 및 주요사항은 추후 추가로 안내할 수 있으므로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설계관련 유의사항

1. 일반사항

※ 본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이용계획 및 각 시설의 설치계획 등은 사업추진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카달로그, 단지모형 및 기타

- 홍보물에 표현된 주변 현황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 측량결과에 따른 설계변경(대지면적 변경)이 진행될 수 있으며, 향후 지적확정 측량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음.
 - ※ 면적은 계산상 소수점 자리의 표기 방식의 차이로 인해 전체 연면적과 세대별 계약면적의 합계는 오차가 생길 수 있음.
 - ※ 추후 등기를 위해 소수점 자리의 표기방식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 본 단지는 동별로 차량 및 보도 이용 시 이동 거리에 차이가 있으며, 해당 동의 동출입구의 위치, 단지 내외부 이동 동선, 동간 이격거리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 단지 배치 특성상 단지 내외 도로(단지 주변 도시계획도로 및 지하주차장 출입구 포함)와 단지 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에는 차량소음, 야간 가로등, 자동차 전조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계약 전 사업부지 현황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본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현장 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사전에 사업부지 내외 현황을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도로여건, 인근 건물 신축계획 등 주변 개발현황,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불이익은 개인의 책임이므로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주변 건물의 신축, 개축 등으로 인해 현재와 다르게 조망, 일조,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당 사업과는 무관한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아파트 외관 개선 또는 인·허가조건 상 일부 세대의 전·후면 발코니, 일부 지붕 및 옥탑 상부 등의 위치에 장식물 또는 구조물 등이 부착될 수 있습니다.
 - ※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 보수, 관리에 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각동의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가로등 및 야간조명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계약 세대가 속한 동, 층 및 향에 따라 입주 후 소음, 진동, 사생활권,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계약자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마감자재 등은 주택형별, 타입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계약 전 주택홍보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각 세대 배치에 따른 인접 동 및 인접 세대에 의하여 조망과 향, 일조량 등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택홍보관에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단지 도로는 향후 주변 도시계획계획 등 사업주체, 지자체 및 기타 관련기관의 추진 과정 중 변경, 지연, 취소될 수 있습니다.
 - ※ 근린생활시설, 주민공동시설 주변 LEVEL 및 외관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대지경계,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의 대지면적은 최종 측량 및 지적 공부정리 절차 등 부득이한 사유로 면적의 증·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본 아파트의 시공상 구조(기초형식 변경 포함) 및 성능 부분에 대해 행정관청 협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유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최종 사업계획 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수락하에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또한 사업계획 승인변경 등 관련 법규에 따른 제반서류는 요청 당사자가 징구하여 사업주체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조감도, 단지 모형도, 배치도 등에 표현된 주변 도로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로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 ※ 아파트의 현장 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규(주택법, 건축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은 조합원 모집 시 제시한 기능으로 적용되고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 배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주민 부대복리시설의 형태, 내부구조, 가구 및 집기류는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주민 부대복리시설의 내부시설은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당사가 시공하며, 그 외 기타 기기 및 비품은 입주 후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구입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 ※ 단지에 설치되어 있는 부대/복리시설 등에 대한 사용과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실 입주 후 (가칭)주민자치협의 기구에서 결정하여 운영되며, 입주민 전체의 공동시설물로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경로당의 시설 및 기기는 추후 운영 주체에서 별도 구비합니다.)
 - ※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관리사무소, 지하주차장, 경비실 등 부대복리시설은 인·허가를 통하여 실제 시공 시 위치, 다른 실로의 변경, 통합, 사용자 동선, 입면형태, 실내구획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등의 사용에 대하여 각 동별 사용 시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배치 및 사용상에 대하여는 주택홍보관에서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지하주차장과 아파트 지하층의 엘리베이터 홀과의 연결통로의 길이 및 형태는 각 주동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 각 동의 주출입구는 주변 지반LEVEL 등에 따라 위치 및 구조형식 등이 동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단지 내 조경, 수경시설 및 조경수 식재위치는 입체적 단지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나 식재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관계기관과 심의결과, 시공과정 등에 따라 조경 시설물에 따른 조경 선형이나 포장 및 조경시설물의 재료, 형태, 색채,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주변 도로의 경사도 및 대지의 LEVEL 차이로 인하여 본 건물의 LEVEL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단지 내 도로의 경사도는 시공 중 주변 도로의 경사도 및 LEVEL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실제 시공 시 대지면적, 연면적, 용적률, 주차대수는 인·허가 과정에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유의사항

- ※ 조합원 가입계약서에 따른 조합원 분담금은 확정 공급금액(토지 취·등록세, 보존등기비 등 개발부담금 별도)입니다. 단, 추후 관련법규 개정, 사업 인·허가, 설계변경, 시공사 변경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추가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개발계획 및 사업지 주변 도로차선 및 교통체계는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으로 사업주체, 지자체 및 기타 관련기관의 추진 과정 중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홍보물의 인쇄과정 상 제작오류가 발생할 수 있음)
- ※ 본 아파트의 명칭, 동 표시 및 동 번호, 외부 색채와 그래픽은 관계기관의 심의 또는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설비의 배관, 배선이 노출되어 있고 아파트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구조는 굴토 후 지내력시험 결과 및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단지 배치상 기계실, 전기실, 급·배기구 및 쓰레기 분리수거장 위치에 따라 일부 세대는 소음, 냄새 및 해충 등에 의한 생활 환경에 불편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 ※ 단지 내 지하시설물의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로 인하여 인접한 저층 세대는 조망 등의 침해를 받을 수 있으니 계약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각 주동 주출입구 홀 지붕은 입주자가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사용으로 인한 피해발생 책임은 해당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 보행자 출입구 등과 인접한 세대는 소음, 분진 및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으며 저층 세대 및 일부 세대의 경우, 향 배치에 따라 일조가 충분하지 않거나 불리할 수 있습니다.
- ※ 단지 내 계획된 어린이 놀이터로 인해 인근 해당 동 및 세대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 세대별 현관 주변에 엘리베이터 홀 설치로 인하여 사생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근린생활시설 등, 모든 시설을 공용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 ※ 단지 내 커뮤니티 및 기타 주민공동시설 등은 입주 후 입주인이 자체적으로 운영 및 유지관리하여야 합니다.
- ※ 근린생활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등 부속동과 인접한 세대는 지상 또는 옥상에 설치되는 에어컨 실외기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열기에 의한 사생활권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단지 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 배치 특성상 일부 세대에서는 사다리차 진입이 어려울 수 있으며,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 인근 옹벽이나 석축의 계획 및 위치는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저층 세대의 경우 조망권 및 일조권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 ※ 조합원 모집 이전에 제작된 홍보물은 사전홍보 시 소비자의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되거나 사용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니, 주택홍보관 방문 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항공촬영 이미지는 CG를 합성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 각종 인쇄물 및 제작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CG, 일러스트(그림) 및 주택홍보관 내 전시모형(건축무르 조경, 시설물, 단위 세대 등)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주택홍보관 및 현장을 방문하시고 구획선과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서의 결과에 따라 인·허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각종 광고, 홍보 유인물(사이버 주택홍보관, 홍보 카달로그, 홈페이지(블로그, 카페 포함), 안내문 등)에 표시된 도로, 기타 공공시설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 예정 중인 사항으로 향후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 ※ 조합원 모집자료 상의 평면도와 아이소메트릭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인·허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각종 인쇄물 및 모형도 등에 표현된 옥상 옥탑부, 주동형태, 창호형태, 측벽 디자인, 외부색채, 외벽 로고사인, 외벽마감, 식재, 바닥포장, 단지 내 조경 및 수공간,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등의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시공기준은 인·허가 사업승인 도서와 특화 디자인(지자체 토탈디자인 심의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 ※ 각종 인쇄물 상 단지 배치도의 대지경계선, 각종 법면 현황은 최종 측량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도로 및 조경선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에 의하여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주택홍보관 내 건립 세대, 주민공동시설, 카달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디스플레이용품 등은 모집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 모형의 조경, 식재, 주변 환경 및 부지 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주택홍보관에 설치된 제품은 자재의 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주택홍보관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헤드의 위치 및 개수는 주택홍보관용으로 실제 공사와는 무관하며, 실제 공사 시 소방법령에 맞추어 설치될 예정입니다.
- ※ 세대 내 창호 및 문의 형태 및 위치는 주택홍보관 및 사업승인 도서 기준으로 시공되나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 형태가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가변형구조 변경 시 전기, 배선기구 위치가 실제 시공 시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주택홍보관을 방문하여 참조하시기 바라며, 주택홍보관에 미 전시된 이형 평형의 경우 계약 전 평면형태, 가구배치, 실면적 등 주택홍보관 설치평형과 다른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 계약하십시오.
- ※ 천연자재는 자재 특성상 동일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자재 자체의 특성상 하자의 판단은 KS 기준에

명시된 내용에만 한정합니다.

- ※ 공장생산 자재의 경우 자재의 특성상 하자의 판단은 KS 기준에 명시된 내용에만 한정합니다.
- ※ 주택홍보관은 조합원 모집완료 후 일정기간 공개한 후 임의로 폐쇄 및 철거할 수 있으며, 철거 전에 주택홍보관 내부를 영상 촬영하여 보관토록 함.
- ※ 지정일(입주자 사전방문일)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 주택홍보관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며, 비확장형 세대는 선택할 수 없으므로 계약 전에 이를 충분히 인지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두 등이 폭, 높이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능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각 동의 전실 및 홀 등의 공간은 주거공용부분으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 입주 후 불법 구조물 변경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저층 세대의 외벽 마감재 설치 시에는 외부 창호는 다소 축소 및 변경될 수 있으며, 벽체 두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동일한 주택형이라도 각 동별 계단실, 엘리베이터 홀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동일한 주택형이라도 세대가 속한 동 또는 라인에 따라 각 실의 방향이 다를 수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세대 내부의 욕실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침실 내부로의 물 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되었으며, 또한 욕실 출입 시 문짝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실제 시공 시 세대 내 욕실의 천정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구배와 천정 내 설비배관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발코니 확장으로 인한 실내·외 온도차이 및 생활여건에 따라 결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주기적인 실내환기는 결로발생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 ※ 발코니 확장 시 세대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확장 부위에는 결로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습니다.
- ※ 발코니 외벽은 발코니 확장에 따른 단열재 추가 설치 및 덕트 사이즈 변경 등으로 인해 구조체 및 외관, 가구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대피공간을 포함한 단위세대의 창호는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에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정,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본 아파트의 서비스 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면적 증·감 시 모집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 세대 발코니 내 대피공간은 화재 시 외부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므로 그 사용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 샷시의 형태 및 사양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실외기실, 대피공간은 준 외부공간으로 난방 및 단열재가 시공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며, 조합원 가입신청서, 계약서, 조합에서 작성된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조합 가입철회 및 가입비 등의 반환 (주택법 제11조의 6)

- ① 모집주체는 주택조합 가입을 신청한 자가 주택조합 가입을 신청하는 때에 납부하여야 하는 일체의 금전(이하“가입비등”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는 가입비등을 예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 ③ 청약 철회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청약 철회의 의사를 표시한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 ④ 모집주체는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가 청약 철회를 한 경우 청약 철회 의사가 도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예치기관의 장에게 가입비등의 반환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⑤ 예치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가입비등의 반환 요청을 받은 경우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가입비등을 예치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⑥ 모집주체는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에게 청약 철회를 이유로 위약금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⑦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는 제11조 제8항 및 제9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 ⑧ 제1항에 따라 예치된 가입비등의 관리, 지급 및 반환과 제2항에 따른 청약 철회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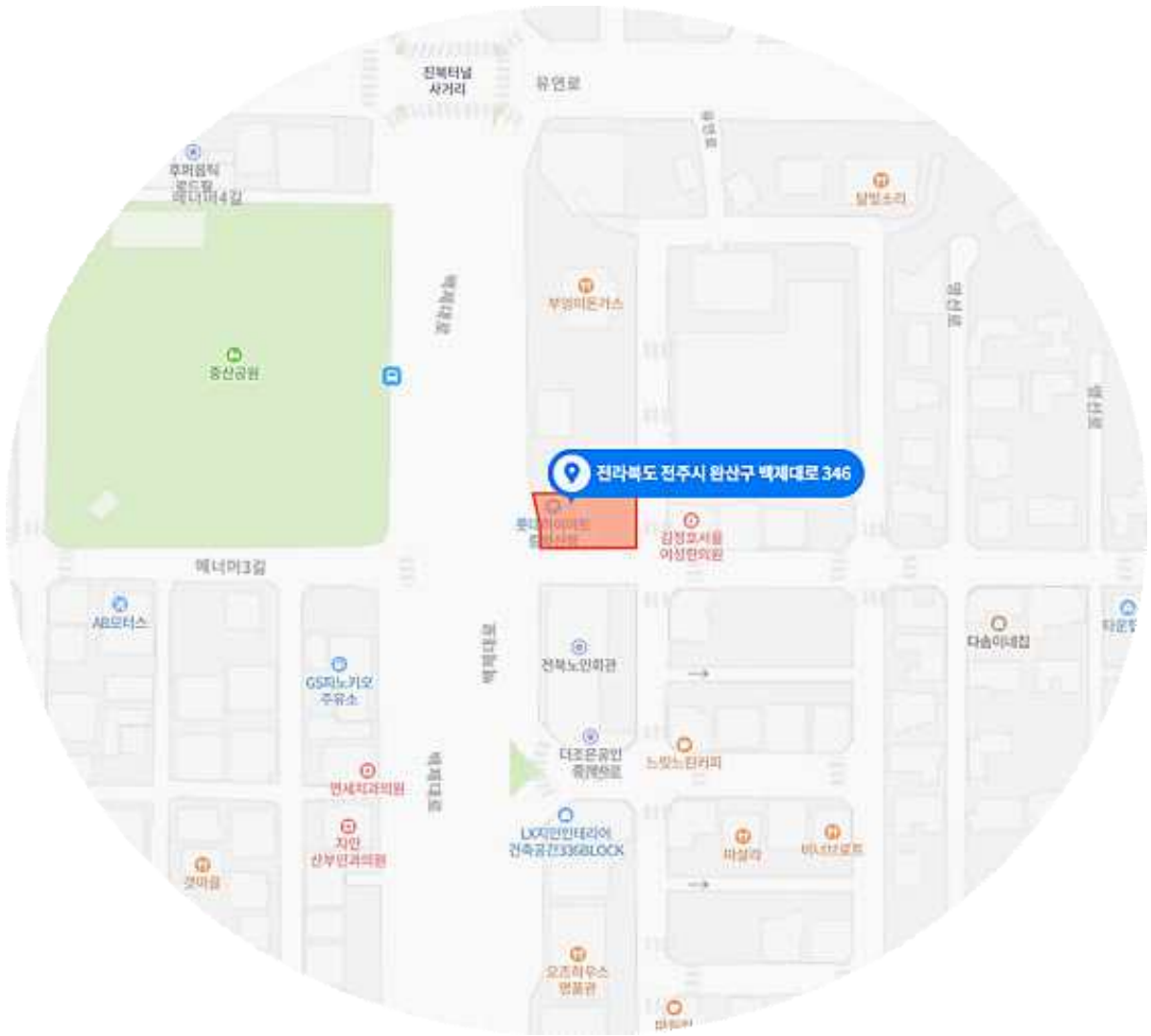
[본조신설 2019.12.10.] [시행일 2020.12.11.], [본조개정 2020.01.23. 제11조의4에서 이동] [시행일 2020.12.11.]

■ 주택홍보관 및 문의사항

□ 주택홍보관 및 조합사무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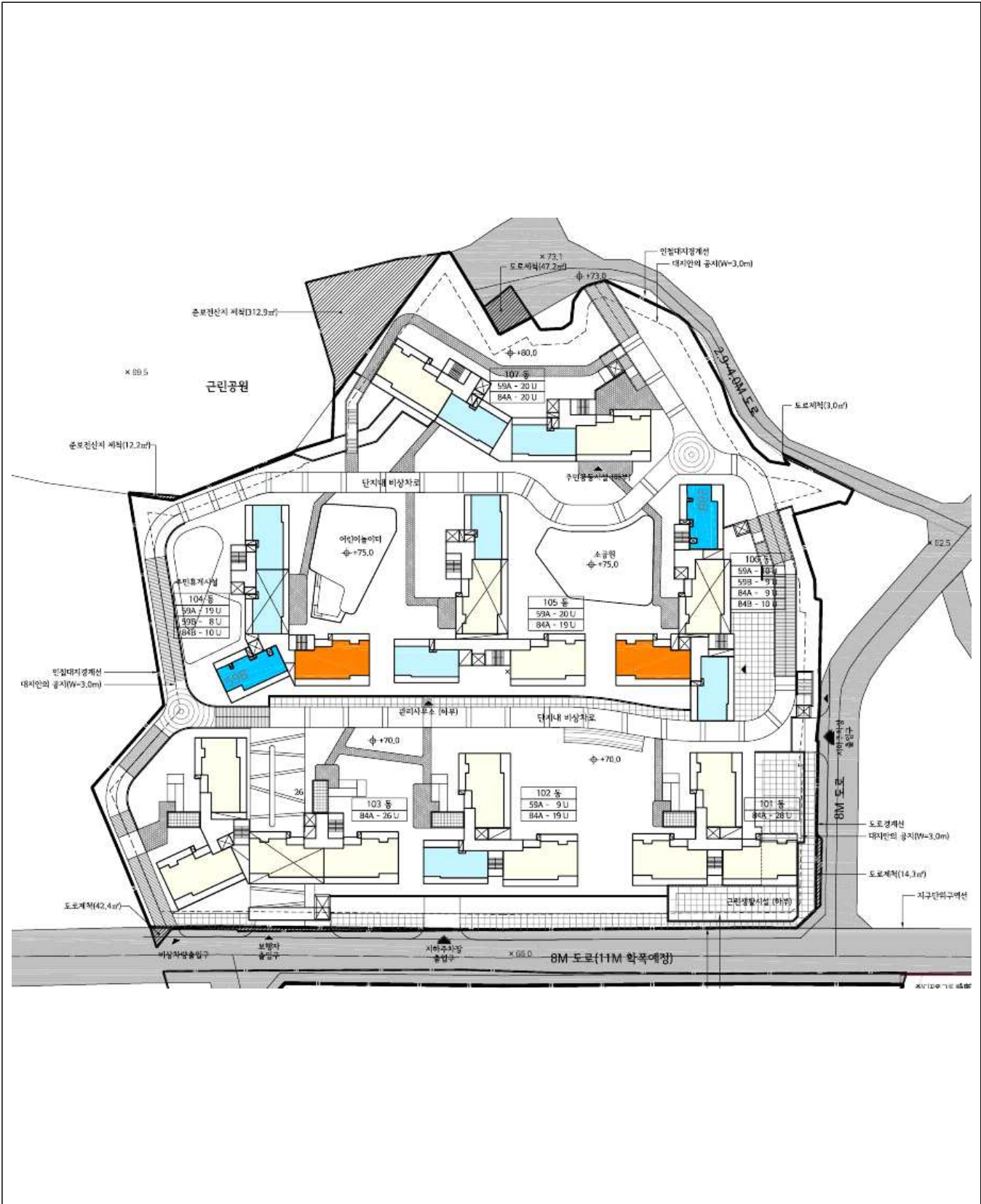
주택홍보관 : 063)236-2030, 조합사무실 : 063)231-2220




주택홍보관 오시는 길



「용머리 강당길 지역주택조합 분양·홍보관」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346 (1, 2층)

※ 본 모집공고는 최근 개정된 주택법 및 관련 법규 등을 반영한 것으로 사업추진 일정 및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가칭)용머리 강당길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또는 주택홍보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대행사		시공 예정사		신탁사
주식회사 다익선개발		(주)에이치제이건설 (구 한진중공업)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